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129, 110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교재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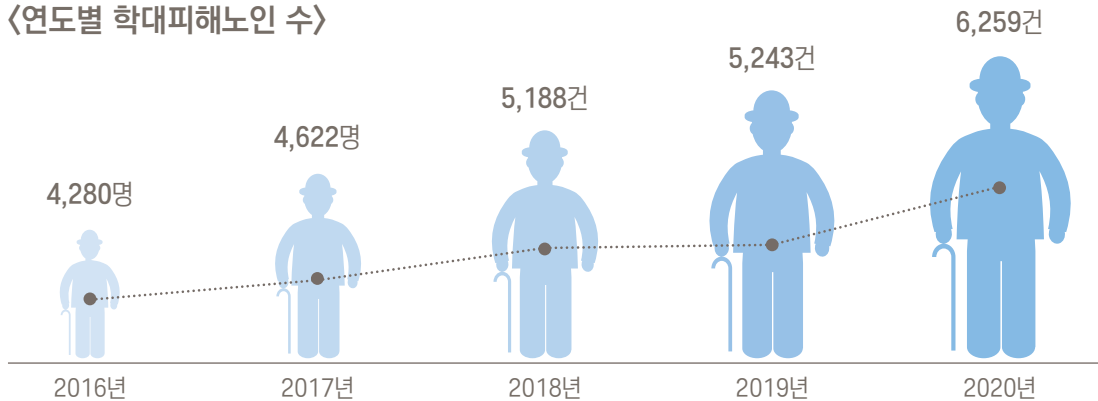
노인학대 현황



Q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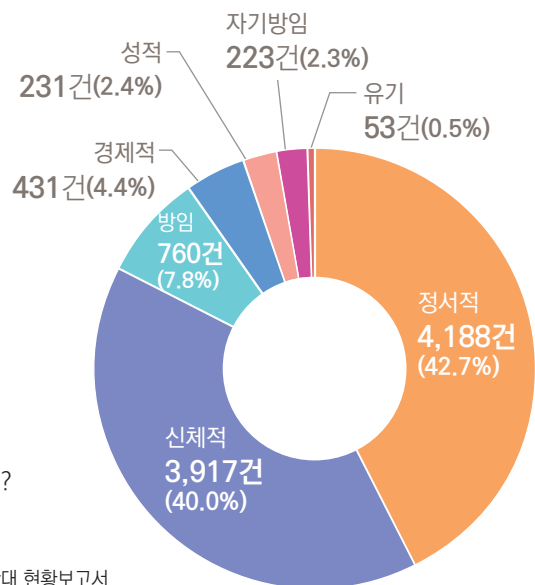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 중복학대 건 포함하여 집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1).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0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Q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일부개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추가 (2022. 03. 22. 시행)

16. 제39조의6제2항제16호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2호).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Q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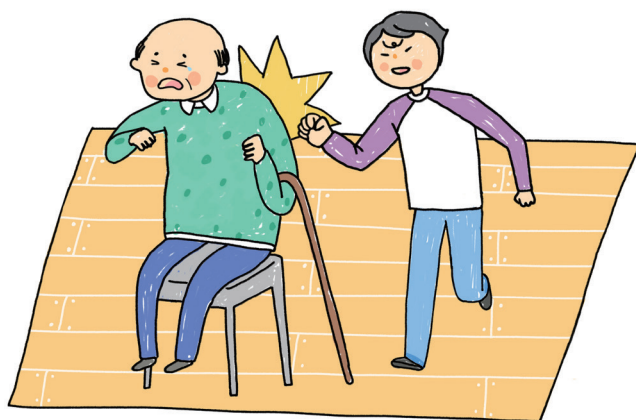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3

노인학대 알아보기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대표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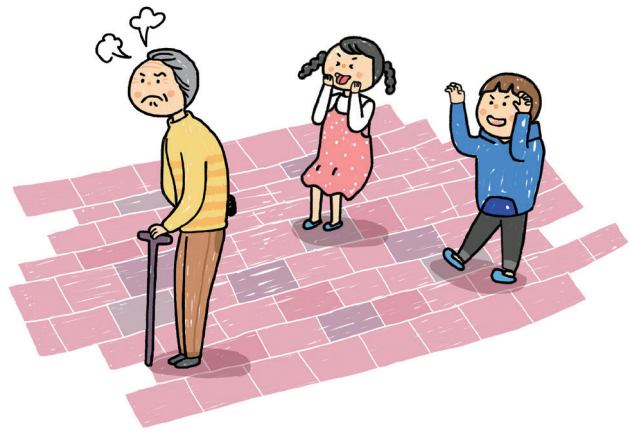
-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 감금 또는 거주지 출입 통제 행위
-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 식사, 음료 등을 단절시키는 행위
-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 원치 않은 일(노동)을 강요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체중감소
- 묵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대표적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행위
- 일상생활(식사, 생활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
- 사회활동, 연락 등을 방해하는 행위
- 위협, 협박하는 행위
- 고함, 욕설 등의 행위
- 모욕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노인과 관련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고 눈치 보는 모습
-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회피하는 모습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대표적 행위

- 강제적인 성관계 강요 및 시도 행위
-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일부를 만지는 행위
-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 케어를 실시하는 행위

예측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 진단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대표적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
-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 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예측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등의 서류 처리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를 가로챈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은행계좌에 부적절한 거래 발견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대표적 행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 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는 행위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예측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신변처리(미용, 목욕, 손톱관리, 옷 입기 등)가 안된 상태
- 노인의 건강, 주변환경의 안전위험 증후
- 불결한 주거환경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대표적 행위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 시키고 연락,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예측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 시킨 후 연락 두절

04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신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이 오히려 사례파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자 관련정보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현 거주지, 연락처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자의 욕구 : 노인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 학대피해노인 관련정보

- 학대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 안전여부, 긴급분리 보호여부, 노인의 심신상태 등
-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등
- 학대내용

○ 학대행위자 관련정보

-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여부

○ 학대 관련정보

- 학대 발생여부 : 학대유형, 학대정도 및 심각성,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등

○ 시설 관련정보*

- 학대내용 : 시설 관리·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시설 내 이용자 간의 문제인지, 시설 내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의 문제인지 파악

※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시설 관련정보도 파악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는 이관서를 작성하는 경우,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관서 작성의 예

〈이관 시 필수 전달내용〉

- 접수일시: 1월 27일 15시
- 상담원 이름: 김수진
- 신고자 이름: 홍길동
- 신고자 전화번호: 010-1234-5678
- 학대피해노인 이름: 홍철수
- 학대피해노인 거주지: 서울시 강남구
- 학대행위자 이름: 이영희
- 접수내용: 신고자는 학대피해노인의 아들이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신고함. 학대피해노인은 치매로 인해 새벽에 홀로 집을 나가 길가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그러한 학대피해노인을 보며 무능하다, 나가 죽어라 등의 욕설을 하고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기도 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 관련법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는 취약노인으로서의 보호조치와 범죄피해자로서의 보호조치 의미를 갖습니다.

-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근거법**
 - 노인복지법
- **노인학대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관련**
 -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기타 취약노인으로서의 학대피해노인 지원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구조법

05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안내

사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요양보호사는 기저귀 케어를 위해 H노인의 생활실 앞을 지나가던 중 동료 B요양보호사가 H노인의 옆구리와 팔뚝을 세게 꼬집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H노인은 치매가 심해 평소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B요양보호사의 손을 밀쳐내며 소리를 내는 등 아프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A요양보호사는 고민 끝에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 B요양보호사의 행동을 신고하였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지자체 공무원과 해당 시설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상담원은 H노인의 옆구리와 팔뚝에 있는 멍과 상처를 확인한 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CCTV로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또, 상담원은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평소 B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네 아들이 다신 여기(시설) 못 오게 할 거다”, “빨리 죽는 것도 복이다”라며 협박과 폭언 행위를 일삼았다는 추가적인 학대의심 정황 진술을 다수 확보하였다.

반면, 학대행위자인 B요양보호사는 H노인의 옆구리를 꼬집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라기보다 하도 말을 듣지 않아 말을 잘 들으라는 의미로 그런 것이며, 그 뒤로 연고도 발라주고 했으니 학대로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 폭언 등에 대해서는 학대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B요양보호사의 행위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판정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에 판정 결과를 송부하였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타 시설로 전원 된 H노인이 새로운 시설에서 잘 적응하고 있음을 파악한 후 사례를 종결하였다.



0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4개월, 최장 6개월 간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피해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 쉼터생활 지원,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02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 입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쉼터 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학대 피해노인보호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입소의뢰된 학대피해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입소여부 판정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양로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해 전문 심리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연계

학대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에게 발생하는 중독 및 신체, 정신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치료, 방문간호, 의료기관 입원 및 입원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04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상담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개입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제거 하기 위해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또한 노인학대행위로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제공))

05

법률서비스 지원·연계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한 법률서비스(법률상담연결, 소송지원, 고소·고발) 및 가정법률 상담소와 연계 한 이혼절차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내 학대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 및 관내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혼절차 정보제공(가정법률상담소)

06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률 상담소 등을 통하여 법적 이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06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¹⁾



Q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역할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 ① 신속히 유선전화(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통해 상담, 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설종사자 행동강령

-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③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⑥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⑦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⑧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⑨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⑩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⑪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 ⑫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⑬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⑭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2021).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일부발행.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 P. 240

○ 노인복지 생활시설의 역할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었거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 ① 학대사건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 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 하되,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 ·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보건복지부(2021).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일부발췌.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 P.256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 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바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교육방법

자체교육(직장내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중 기관 여건에 맞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1. 자체교육(직장내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안내 홈페이지”에 등재된 교육자료(동영상, PDF, PPT) 활용하여 자체교육 실시
2. 방문교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파견되어 진행하는 교육
3. 온라인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필수업무교육사이트,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자식(GSEEK),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

○ 교육결과 제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 → 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교육안내 홈페이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15771389.or.kr

인권교육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교육대상

1.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2.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방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해 집합교육(연 4시간 이상) 또는 인터넷 교육(연 6시간 이상) 이수

○ 교육결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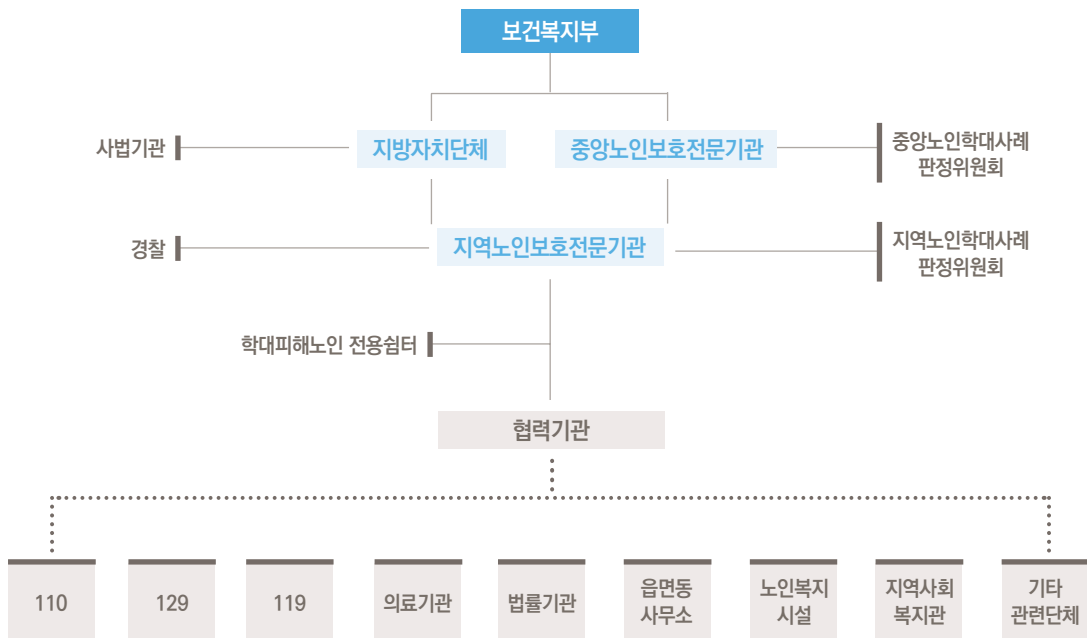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부서) → 시·도(노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07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내용



상담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전문상담
- 노인학대 신고접수
- 일시보호서비스 지원
- 법률지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홍보

홍보사업

- 이동 상담
- 캠페인, 사진 전시회, 세미나 개최
- 대중매체를 활용한 보도자료 배포
- 다양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등) 제작 및 배포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협력체계구축

협력체계 구축사업

- 중앙·지역 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주민센터, 사회복지 시설, 지역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연계망 구축



인권보호

노인인권 보호사업

- 노인인식개선 사업
- 노인인권 지킴이단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





● 사례평가,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사례종결 및
사후 관리

사례판정 후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지정 양로시설 연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제공

사례종결 후 일정기간 동안 학대 재발여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전화 및 방문) 진행

1577-1389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및 전화번호는 25쪽 참고)

0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소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근거하여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소기간

4개월 이내(학대재발의 우려 등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하여 연간 총 6개월 이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지정 양로시설 등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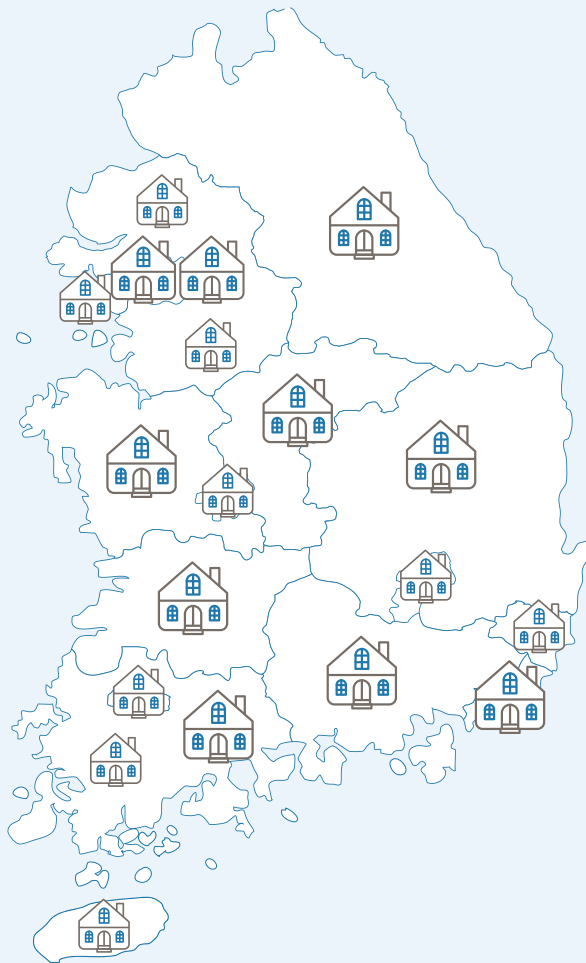
서비스내용

- ①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②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③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④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광역시·도에 1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처벌기준



법률	내용	처벌
벌칙 제55조의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5조의3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신설)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
벌칙 제55조의4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7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제61조의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서울	서울남부	강남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02)3472-1389
	서울북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02)921-1389
	서울서부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02)3157-6389
	서울동부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중랑구	02)470-1389
부산	부산동부	강서구, 남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051)468-8850
	부산서부*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051)867-9119
대구	대구남부*	남구,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053)472-1389
	대구북부	동구, 북구, 서구, 중구	053)357-1389
인천	인천*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032)426-8792
	인천서부	강화군, 계양구, 부평구, 서구	032)569-0533
광주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부, 서구	062)655-4155
대전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042)472-1389
울산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052)265-1389
경기	경기동부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광주시,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031)736-1389
	경기북부*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양주시, 하남시	031)821-1461
	경기서부*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032)683-1389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031)268-1389
	경기북서부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파주시, 동두천, 연천군, 김포시	031)978-1389
강원	강원*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033)253-1389
	강원동부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033)655-1389
	강원남부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횡성군	033)744-1389
충북	충북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043)259-8120
	충북북부*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043)846-1380
충남	충남*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태안군, 홍성군, 세종특별자치시	041)534-1389
	충남남부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041)734-1389
전북	전라북도*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진안군	063)273-1389
	전북서부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익산시, 정읍시	063)443-1389
전남	전남동부*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061)742-3071
	전남서부*	강진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061)281-2391
경북	경북동부*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포항시	054)248-1389
	경북북부*	봉화군,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054)655-1389
	경북서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성주군, 상주시	054)436-1390
	경북남부	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053)716-1389
경남	경남*	거제시, 고성군,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창원시(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통영시, 함안군	055)222-1389
	경남서부	거창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055)754-1389
제주	제주*	제주시	064)757-3400
	서귀포시	서귀포시 관내(17개 읍면동)	064)763-1999

* 표시된 기관에서 쉼터 운영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발행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편집 시설노인보호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전화 02-3667-1389 팩스 02-2634-5023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인쇄발행 2021년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129, 110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앱스토어 다운로드